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77 발의연월일: 2025. 1. 9.

발 의 자: 강대식 • 조지연 • 김상욱

강선영 • 유용원 • 고동진

김상훈 • 박준태 • 성일종

주호영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2024년을 기준으로 병역명문가 신청은 5천 건 이상, 선정은 4천 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병역명문가 신청·선정 등에 관한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, 현행법은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근거 없이 「병역명문가 선정·취소 기준 및 절차」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함(안 제78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조제1항 중 "제81조"를 "제81조, 제82조의3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8조(병무행정사무의 위임) ①	제78조(병무행정사무의 위임) ①
제20조, 제31조의2제2항, 제34	
조의2제5항, 제70조제1항·제3	
항, <u>제81조</u> 및 제95조에 따른	<u>제81조, 제82조의3</u>
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	
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	
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